

학교생활규정



호남제일고등학교

차 례

제1장 총 칙	4
제2장 생활선도위원회	4
제3장 학생생활 규정	5
제1절 교내 생활	5
제2절 용의 복장	7
제3절 포상 및 징계	9
제4절 교외 생활	11
# 별표 1 교복 규정	13
# 별표 2 징계 기준표	14
제4장 학생생활평가제(상 · 벌점제)규정	15
제1절 총칙	15
제2절 생활선도소위원회	15
제3절 상점	16
제4절 벌점	17
제5절 누적벌점에 따른 징계	18
제6절 패자부활	19
# 별표 3 상점 기준표	20
# 별표 4 벌점 기준표	21
제5장 학생자치회 운영 규정	22
제1절 총칙	22
제2절 운영위원회	23
제3절 대의원회	24
제4절 지도위원회	25
제6장 학생자치회 정 · 부회장 선출 규정	26
제7장 학급회 정 · 부회장 선출 규정	30
별지서식 1 학생회장 · 부회장 후보자 추천서	32
별지서식 2 학생회장 · 부회장 입후보 보호자 동의서	33
별지서식 3 서약서	34
별지서식 4 학생회장 · 부회장 후보자별 참관인 명단	35
별지서식 5 사퇴서	36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호남제일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학교생활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3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인권 우호적 학교문화, 교육공동체 합의에 의한 교육활동으로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있는 민주적인 학교문화, 교권과 학생 인권이 조화를 이루고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습관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의 규정에 의한 학칙 중 동조항 제1항, 제4호, 제7호 및 제8호 규정에 따라 제정된 학칙에서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 제정을 규정한 것에 근거한다.

제2장 생활선도위원회

제5조(생활선도위원회의 구성)

1. 학생들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장의 자문기구로 생활선도위원회와 생활소선도위원회를 둔다.
2. 생활선도위원회는 교감, 학생인성인권부장, 교무부장, 해당 학년부장, 상담 교사, 학생인성인권부 기획(사안담당)교사, 상벌담당교사로 구성하며 교감은 이 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학생인성인권부장은 이 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한다.
3. 생활선도위원회는 의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심의하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생활소선도위원회는 학생인성인권부장, 학생인성인권부 기획(사안담당), 상벌담당교사로 구성하며 학생인성인권부장이 의장이 되고 기획이 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한다.
5. 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교감, 교부부장, 학생인성인권부장, 1.2.3학년부장, 상담교사, 학생인성인권부 기획(사안담당), 상벌담당교사로 구성하며 교감은 이 위원회의 의장이 되어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학생인성인권부장은 이 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한다.
6. 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의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심의하며 학부모가 재심을 청구한 사건을 심의한다.

제6조(생활선도위원회의 기능)

1. 생활선도위원회는 「사회봉사」이상에 해당하는 학생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소집하고 이를 심의한다.
2. 생활소선도위원회는 「학교 내 봉사」이하의 징계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하여 심의한다.

제7조(선도 원칙)

1. 학생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2. 학생 선도는 문제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3. 학생 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동기, 과정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처리하되 교육적인 면을 중시하여 선도 위주로 처리한다.

제8조(사안 설명) 생활선도위원회 및 생활소선도위원회는 심의 전에 당해 지도교사 및 담임 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이나 보호자(학부모)에게도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다.

제9조(재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 학교장이 심의 사항에 대하여 재심을 요구한 경우
2. 학생 또는 보호자가 징계 결과를 통보받은 후 2일 이내 서면으로 재심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기록 및 보관)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에 대하여 사안담당 교사는 생활선도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여 그 근거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3장 학생생활 규정

제1절 교내생활

제11조(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이용 및 환경)

1.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2.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1.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2.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14조(교우관계)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5조(폭력예방)

1.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을 활용할 수도 있다.

- ①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 ②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소리(신고)함
- ③ 도교육청 학교폭력 핫라인
- ④ 학생고충신고상담전화 1588-71**
- ⑤ 대검찰청 학교폭력신고전화 1588-28**
- ⑥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도우미 1388
- ⑦ 경찰청 범죄신고 112 등

3.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4. 폭력 피해학생 중 학급 교체 또는 전학을 희망할 경우 담임교사나 학생인성인권부(상담) 교사에게 전학 신청을 할 수 있다.
5. 폭력 가해학생은 부모와 학교의 동의를 얻어 전학을 할 수 있다.

제16조(이성교제) 이성간의 예절을 지키고 건전한 이성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한다.

1. 남녀학생 간 서로 존중하고 양성평등 의식을 갖는다.
2.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3. 남녀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4. 상대방의 일방적인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심할 경우 담임교사나 상담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5.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받도록 노력한다.

제17조(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 시간을 잘 활용한다.

1.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2.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전산실, 음악실, 체육관,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실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3.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8조(학급 내 봉사활동) 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주번)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급환경 정돈, 출결사항 점검,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2. 청소구역의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3. 학급비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4. 소정의 등교시간 보다 일찍 등교하여 활동에 임하고 종례 후 정리정돈을 한다.

제19조(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입장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2.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20조(출결사항) 학생의 결석, 결과, 지각 조퇴를 방지하고 성실한 학업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결 지도 규정을 둔다.

1. 외출이나 조퇴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담임교사가 발급하는 외출(조퇴)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담임교사 부재 시에는 다른 교사에게 발급받을 수 있다.
2. 무단 외출, 종례 시 무단 불참자는 무단 결과 1회로 간주한다.
3. 무단 외출, 무단 결과, 무단 지각, 무단 조퇴, 무단결석 등의 누계가 10회 이상인 경우 학급 담임은 가정 통신문을 발송하고 학생인성인권부에서는 학부모 내교 조치 및 해당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소년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한다.
4. 위 3항의 누계가 20회 이상인 경우 학급 담임은 가정 통신문을 발송하고 학생인성인권부에서는 학부모 내교 조치 및 해당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선도위원회를 열어 징계(사회봉사 3~9일)를 결정 한다.

제21조(교내 휴대전화 사용)

1. 휴대전화는 등교 후 조회시간을 이용하여 학교에서 제공하는 휴대전화 보관함에 보관한 후에 종례시간에 반환한다. 단, 학습 용도의 인터넷 활용 및 긴급한 경우 해당 시간 담당 교사의 허락을 받아 사용한다.
2. 위항에 위배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한 경우에는 상.벌점 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여한다.
3. 그밖에 고가의 정보통신기기는 분실 예방을 위해 가급적 휴대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제22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21조의 제반 사항을 위반할 때는 그 정도에 따라 현지 교정 지도를하거나 학생생활평가제 규정에 의거 지도한다.

제2절 용의 복장

제23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들이 단정한 용의와 복장을 갖춰 호남제일고등학교 학생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건전한 기풍을 진작하여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4조(교복)

1. 남녀학생의 복장(교복)은 별첨의 복장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교복의 모양을 무단으로 변형하는 것을 금하며 남학생 바지통은 7통 이상으로 하고, 여학생은 스커트 길이가 무릎 선으로 한다.
3. 동절기 외투는 허용하되 등하교 시에는 그 안에 자켓을 착용해야 한다. 단, 등교 후에는 생활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자켓을 벗고 외투를 입을 수 있다. 목도리는 등하교 시에는 할 수 있으나 실내에서는 벗는다.
4. 동절기에는 블라우스 대신 폴라 티셔츠(흰색, 또는 검정색)를 착용할 수 있다.
5. 체육 시간이나 특별한 행사가 있는 날을 제외한 날에는 교복 정장 착용을 원칙으로 하되 여름철에 한해 일과 시간 중에도 체육복을 착용할 수 있다. 단, 체육복 차림으로 등하교를 할 수 없으며 교복과 혼용해서도 안 된다.
6. 동·하, 춘추복 착용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되 기상관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앞뒤 2주간은 혼용할 수 있으며 학생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간을 강제하지 않는다.
 - ① 동 복 : 11월 1일 ~ 3월 31일
 - ② 봄 간 복 : 4월 15일 ~ 5월 15일
 - ③ 하 복 : 5월 16일 ~ 9월 15일
 - ④ 가을간복 : 9월 16일 ~ 10월 31일
7. 하복 착용 시 단추를 잠그고 속옷이나 흰색의 티셔츠를 착용한다.
8. 교복 속에 입는 옷이 교복보다 커서 교복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며 원색이나 현란한 무늬 또는 글자가 있는 옷은 착용하지 않는다.

제25조(두발)

1.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단정하고 조화로운 두발형태를 유지한다.
2. 원래의 모발 모양과 색깔을 유지하고 염색과 파마를 금한다.
3. 무스, 스프레이, 젤 등의 사용 및 소지를 금한다. 단, 특기신장에 필요한 경우(예·체능 특기생)나 신체 이상 자는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사회통념상 학생으로서 정상이 아니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유행성 스타일을 불허하며 남, 여학생의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여학생의 두발 길이는 자유로 하되 길이가 배꼽 선을 넘지 않도록 하며 머리가 겨드랑이 선을 넘으면 단정하게 아래로 묶도록 한다.
 - ② 남학생은 성을 구분 할 수 없는 두발형태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삭발을 하지 않으며 수염이나 구레나룻, 부분삭발 등의 변형된 형태를 금한다.

제26조(신발 등)

1.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학생용 단화 또는 운동화를 신으며 실내에서는 실내화만을 착용한다.
2. 사회 통념상 학생용 신발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신발 등은 불허한다.
3. 스타킹은 동복에는 검정색, 간복에는 살색을 착용하고 반 스타킹은 검정색을 착용한다.

제27조(가방, 명찰, 교표)

1. 양쪽 어깨에 메는 단정한 학생용(배낭용) 가방을 사용한다.
2. 명찰은 학년별로 색상을 달리하며 탈부착이 가능한 아크릴 명찰로 한다. 단 고정식 천 명찰의 경우는 명찰 덮개를 이용한다.
3. 교표는 천에 새긴 것으로 명찰 아래쪽에 부착한다.

제28조(장신구 및 화장)

1. 귀걸이와 팔찌 등의 장신구는 허용하되 피어싱은 금한다.
2. 화장은 기초화장과 색조화장을 구분하며 색조화장은 제한하며 그 기준은 아이라인, 마스 카라, 볼터치, 풀립이다.
3. 손톱, 발톱의 보호를 위한 투명 매니큐어를 사용할 수 있다.

제29조(음주 및 흡연 기타 행위)

1. 학생의 교내·외 음주와 흡연을 절대 금한다.
2. 교내에서 술과 담배 및 라이터 소지는 음주와 흡연으로 간주한다.
3. 흡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다.
 - ① 1회 적발 시 : 벌점 10점 및 진술서 작성과 상담실 상담
 - ② 2회 적발 시 : 벌점 20점 및 교내 봉사 활동 2주 (1일 1시간), 각서, 상담실 흡연예방 집단 프로그램 참여, 금연 클리닉 참여(전주시 보건소), 부모 소환 알림장 발송
 - ③ 3회 적발 시 : 벌점 40점 및 부모님 소환, 특별교육 1주일, 부모와 함께하는 토요 교내 봉사 활동 1일(부모와 함께 참여시 벌점감점 및 교내봉사활동 2배 인정)

제30조 (교내생활 위반자 지도) 학생 체벌은 금하고 그린마일리지 제도(상·벌점제도)를 적용한다.

제3절 포상 및 징계

제31조(포상) 본교 시상규정에 따름

제32조(징계의 종류)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는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2. 사회봉사는 3~9일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3. 특별교육 이수는 10일 이상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는 학교 선도 규정 등에 의해 시행하되,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무단결석'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5. 퇴학 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학교장은 행하여야 한다.
 - ①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 ③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 ④ 퇴학처분의 징계를 하기 전에 10일 이내의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때 「가정학습」기간은 사고결석으로 처리한다.

제33조【 징계의 방법 】 선도 및 징계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2. 학교 내의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게 하며, 학생인성인권부와 상담교사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 활동(1일 2시간 이내)을 하게 한다.
3. 학내 봉사운영은 학교 환경미화 작업, 학교행사 보조, 교원들의 업무 보조, 교재 교구 정비, 기타 제반 잡무 보조로 한다.
4.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며 해당 학생은 징계 기간 동안 매일 등교하여 출석 점검을 받고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한 후 귀교하여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사회봉사 운영은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유지,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예술회관 미화업무 보조 등), 사회 복지 기관에 위탁하는 봉사(노인정, 장애인 재활기관, 사회복지관 등)로 한다.
6. 특별교육 이수의 운영은 다음의 내용으로 한다.
 - ①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 교육과정 이수
 - ② 교육감이 위탁 교육을 계획한 금연 학교,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콜 중독 치료 학교의 교육 이수
 - ③ 행동 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 치료 교육전문기관 또는 의료 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 ④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 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 ⑤ 상담 자원 봉사자, 사회복지사 등과 연계하여 1:1로 상담치료교육을 받는 개별 교육 이수
7. 특별교육 징계 대상학생은 특별교육과정 입소 시 및 치료 전문기관 입원 시를 제외하고 매일 등교하여 출석 점검을 받고 교육 또는 치료를 이수한 후 귀교하여 특별 교육 이수에 관한 구두 또는 서면 보고를 한다.

8. 퇴학처분을 할 경우에는 복학제도를 알려주고 당해 학생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및 학부모 상담을 통해 대안학교, 직업훈련기관 안내 등 진로 알선에 노력한다.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재심이 청구된 경우 5일 이내에 학생징계조정위원회를 소집하여 처리해야 한다.
9. 퇴학처분 시 학생 징계 대장에는 '00년 0월 0일 퇴학 처분(00기관으로 전편입학, 재입학, 입소, 취업 등)과 아울러 진로 상담 결과를 간략히 기재한다.
10. 제32조 1, 2, 3항의 봉사활동 시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11. 학생 지도를 할 때에는 훈육이나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고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34조(징계의 절차) 징계의 절차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사안이 발생하면 담임교사 등은 처벌대상 학생을 학생인성인권부에 즉시 인계한다.
2. 학생인성인권부는 학생이 사안 내용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다.
3. 학생이 작성한 진술서에 기초하여 해당 학년 생활지도 사안 담당교사가 사안 내용을 조사한 후 사안 경위서를 작성하고 학생인성인권부 회의를 통해 생활선도위원회 혹은 생활소선도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
4. 이 결정에 따라 생활선도위원회 혹은 생활소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절차를 진행하되 14일 이내에 종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5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단, 징계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은 생활 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시행한다.

제36조(가중 처벌) 다음 각 항의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의 비행 사실에 한해 가중 처벌할 수 있다. 단, 학교 폭력은 학년도에 제약을 두지 않는다.

1. 징계 처분에 불응하거나 징계기간 내에 무단결석을 한 경우
2. 징계 내용을 불성실하게 이행했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징계에도 불구하고 동일 사안이나 새로운 사안을 야기하였을 경우
4.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성폭력)을 행한 경우

제37조(징계 확정) 징계 사안에 대하여는 교내지도 담당교사의 진상조사와 담임교사의 의견을 근거로 생활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확정한다.

제38조(징계내용 통보)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즉시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제39조(징계 고사 응시)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고사에 응하게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고사기간은 징계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40조(징계 경감) 다음 각 항의 경우 담임교사 및 진로상담교사의 책임 지도를 전제로 징계를 경감하거나 징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징계 대상 학생이 선행·효행 등의 모범적인 사례가 있는 경우
2. 징계 해제 전의 징계 학생이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41조(징계 해제) 학생인성인권부는 징계 해제 전에 차후 <학생선도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징계 학생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받는다.

제42조(사후 지도)

1.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에서 해제된 학생을 수시로 지도하고 지도 결과를 누가 기록 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 5항에 의거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타 학교로 학교장 추천에 의한 전·편입학을 권할 수 있다.

제43조(기타)

- 징계처분 내용은 생활선도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며 추수지도 자료로 활용한다.
- 제32조 1, 2항의 학교 내의 봉사와 사회봉사 징계에 따른 활동은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 징계기간은 학교장의 재가를 얻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4절 교 외 생 활

제44조(교외생활) 학생은 교외생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및 불법취업을 금한다.

제45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46조(규정의 개정)

- 본 규정의 개정은 학생, 교원, 학부모 대표로 구성된 개정심의위원회의 의결과 학교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개정한다.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시 학생 대표가 참관인으로 참여하여 참고발언을 통해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 규정 및 학칙개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학생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3년 3월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05년 5월 30일 개정하여 2005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이 규정은 2007년 4월 30일 개정하여 2007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이 규정은 2008년 4월 15일 개정하여 2008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이 규정은 2010년 3월 19일 개정하여 2010년 3월19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이 규정은 2011년 4월 29일 개정하여 2011년 5월2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이 규정은 2011년 11월 29일 개정하여 2011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이 규정은 2013년 2월 27일 개정하여 2013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 이 규정은 2014년 3월 20일 개정하여 2014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 이 규정은 2017년 9월 14일 개정하여 2017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교복 규정】

남학생		여학생
자켓		
하의		
조끼 및 카디건		

【교복 길이 규정】

남학생				여학생			
상의 자켓 길이		바지 길이		상의 자켓 길이		스커트 길이	
호 칭	길이	호 칭	길이	호 칭	길이	호 칭	길이
79	58.5	97	67.5cm	68	33.1cm	86	39.4cm
82	60cm	100	68.5cm	71	33.7cm	89	40.7cm
85	61.5cm	103	69.5cm	74	35cm	92	42cm
88	63cm	106	70.5cm	77	35.6cm	95	43.2cm
91	64.5cm	109	71.5cm	80	36.9cm	98	44.5cm
94	66cm	112	72.5cm	83	38.1cm	101	45.8cm

※ 여학생 스커트의 길이와 남학생 바지통을 변형(줄임) 시킬 경우 본교의 교복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두 압수하여 폐기한다. 특히, 남학생 바지통은 7통 이상으로 규정하며, 여학생 스커트 구입 시 키와 허리 사이즈에 관계없이 스커트의 길이가 무릎선 위로 올라가서는 안 된다.

별표 2

【징계기준표】

구분	항	행위내용	상별점에 규정에 따라 처리	징계 유형			
				학교 내의 봉사	사 회봉 사	특 별교 육이수	퇴학 처분
예 절	①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	○			
	②	용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				
	③	언행이 불손한 학생	○	○			
	④	교사에게 불경한 언행이나 폭력을 가한 학생			○	○	○
	⑤	언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	○	
준 법	⑥	공공시설물, 집기류 등을 고의로 파손한 학생	○	○	○	○	○
	⑦	공공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나쁜 목적으로 사용·대여한 학생			○	○	○
	⑧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⑨	인원 점검 시 대리로 답한 학생	○	○			
	⑩	학교 단체 행사에 불참한 학생	○				
	⑪	학교 출입 시 월장한 학생	○	○			
	⑫	징계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⑬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	○	○	
	⑭	사법기관에 구속 석방된 학생		○	○	○	○
	⑮	인장 및 제증명을 위조한 학생		○	○	○	○
	⑯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	○
	⑰	불온 문서 및 유해한 정보 통신 매체물을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	○	○
	⑱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	○
	⑲	수업 준비 및 태도가 불량한 학생	○	○			
수 업	⑳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	○			
	㉑	수업을 거부한 학생		○	○	○	
	㉒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동조한 학생		○	○	○	
	㉓	시험을 거부한 학생			○	○	
	㉔	백지 시험을 주동하거나 선동한 학생			○	○	○
	㉕	시험 문제를 누설 또는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	○	○

구분	항	행 위 내 용	상별 점정에 따라 처리	징계 유형			
				학교 내의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이수	퇴학 처분
근 태	(26)	무단으로 결석, 결과, 지각, 조퇴를 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7)	무단으로 결석, 결과, 조퇴가 상습적인 학생	<input type="radio"/>				
	(28)	무단가출하여 사회 물의를 야기한 학생	<input type="radio"/>				
	(29)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10일 이상 무단결석을 한 학생	<input type="radio"/>				
약 물	(30)	흡연, 음주가 상습적인 학생 <담배.라이터.술 소지자도 동일하게 처리함> (1회-학교내의 봉사, 2회-사회봉사, 3회-특별교육 이수, 퇴학처분)	<input type="radio"/>				
	(31)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학생 (1회-특별교육 이수, 2회 이상-퇴학 처분)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퇴 폐 행 위	(32)	도박 또는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3)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4)	불량서적(음란서적)을 소지하거나 탐독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5)	불량 비디오 및 녹음테이프를 소지하거나 시청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6)	불건전한 이성 교제 등으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input type="radio"/>				
	(37)	성과 관련된 그릇된 언행으로 피해를 입힌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금 품	(38)	금품과 관련된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9)	공납금을 유용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40)	금품을 절취, 사취 또는 강탈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집 단 행 위	(41)	불법집회 또는 불량서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42)	허가 없이 서클을 조직 운영하여 교칙을 문란하게 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43)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 행사에 출품, 출연 또는 참가하여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44)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45)	동맹휴학을 선동, 주동하거나 동참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46)	정치 관여 행위 등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정 보 통 신	(47)	가상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48)	음란, 폭력 사이트에 접속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49)	불건전한 영상물을 제작, 복제 유포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50)	쉬는 시간 이외 학교 활동 시간에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51)	고사시간에 휴대폰, 전자기기를 소지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제4장 학생생활 평가제(상 · 벌점제)규정

제1절 총 칙

제1조(목적)

- 학교 현장에서 체벌 없는 생활지도로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한다.
- 학생들이 기본 생활 예절과 교칙 등의 규범을 잘 지키도록 한다.
- 봉사와 질서 존중의 정신을 배양하여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한다.
-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학생들을 적극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써 건전한 학생 생활 문화를 육성한다.

제2조(시행 및 결과 처리)

- 학생 선도규정에 명시하지 못한 분야의 시행 상 세칙 역할을 한다.
- 상점카드와 벌점카드는 모든 교무실에 비치하고, 학생 지도상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본교의 모든 교사가 발급할 수 있다.
- 경고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다고 여겨지는 교칙 위반 사항 적발 시에는 학생 본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가운데 벌점카드를 제시하고 내용을 기재한다.
- 카드 작성 시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카드의 학생 확인란에 서명을 받고 지도교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학생인성인권부 평가 담당교사에게 제출한다. 학생들이 피해의식을 갖지 않도록 본 규정의 취지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지도한다.
- 카드를 발급한 교사는 카드를 상 · 벌점 카드함에 넣고 그린마일리지 시스템을 통해 학급 담임이 확인하여 지도에 참고하도록 한다.
- 학생인성인권부에 제출된 상 · 벌점카드는 담당교사가 누가기록부에 기록, 관리하며 매월 말 통계를 내어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학생 개인의 상 · 벌점은 1년 단위로 누적되며, 벌점의 월말 누계가 일정 점수에 이르게 되면 사전에 경고하고, 해당 벌점에 이르면 봉사활동(교내봉사활동 또는 사회봉사활동)을 부과한다.
- 담임교사 및 학생인성인권부, 상담부 담당교사는 벌점을 받은 학생을 수시로 상담, 지도 한다.
- 학생인성인권부 평가담당교사는 학생의 벌점을 개인별 누가기록부에 기록한다.
- 벌점의 누가 기록은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게 되면 모두 말소한다.
- 학년 말 담임교사는 학교 생활기록부 작성 시 상기 누계 점수를 참고하여 기록한다.
- 20점 이상의 벌점을 받은 학생의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의 '행동발달 종합 의견'란에 이 사실을 반영하여 기록하고 상을 받은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수상 기록'란에 기록한다.

제2절 생활선도소위원회

제3조(생활선도소위원회의 구성)

- 생활선도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상 · 벌점에 관한 규정과 그 기준을 마련한다.
- 위원회는 교감, 학생인성인권부장, 상담교사, 1,2,3학년부장 학생인성인권부 기획(사안 담당), 교내지도 담당교사로 구성한다.

- 교감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운영 전반을 통괄하며 학생인성인권부장교사는 부위원장으로서 사무를 주관한다.

제4조(운영 및 의결)

- 위원회는 상·별점에 관한 규정과 그 기준을 의결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 위원장은 교무회의 등에서 개진된 각 교사의 의견, 학생회의 합당한 건의 등을 수용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규정 개정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 3일 전에 위원들에게 사전 통보한다.
-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규정에 대하여 전체위원 과반수의 발의로 위원장에게 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본 규정으로 결정할 수 없는 특정 사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시행한다.

제3절 상점

제5조(상점의 부과)

- 상점은 선행 학생 추진 및 개인 별점을 감하는데 각각 이용한다.
- 모든 학생에게 귀감이 되는 행동을 한 학생에게 상점을 부여하고 일정한 점수에 도달하면 표창한다.
- 학생이 모범적인 행동을 한 경우 지도교사는 상점카드를 작성하여 학생인성인권부 평가 교사에게 제출한다.
- 상점의 경우 같은 날 동일 학생에게 같은 이유로 중복하여 부여할 수 없다.

제6조(상점의 활용 및 소멸)

- 선행항목을 정해 그 항목에 따라 부여된 점수를 아래의 학생 상점 내용에 따라 기록하고 월별로 통계처리 한다.
- 상점은 지도절차를 위반하여 별점 부여 시 상점에서 상쇄 할 수 있다.
- 그린마일리지(상·별점)제는 학년도 단위로 운영하되 학년도가 바뀌면 전 학년도 누계 점수는 소멸한다.
- 선행 내용이 경미할 경우 칭찬을 통한 동기를 부여하고 선행내용이 여러 차례 반복 시 상점을 부여 한다.
- 학급 봉사, 선행, 모범적인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 담임교사는 매월 1회씩(학급회 또는 담임추천으로 월3명 이내), 모든 교사는 상점발급 사유 발생 시마다 카드를 작성하여 학생인성인권부에 제출한다.
- 동일 학생에게 같은 이유로 중복해서 부여하지 않는다. 작성한 상점 카드는 담당교사가 디지털시스템에 입력하고 상점함에 넣는다.
- 물건을 습득한 경우에는 객관성이 확실한 경우에만 상점을 인정한다.
- 상기 누계 점수를 가지고 우수학급을 대상으로 년 4회 (5, 7, 10, 12월) '그린마일리지 우수 학급상'과 상점이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바른 호남제일인상'을 수여한다.
- 학년 말 담임교사는 학교 생활기록부 작성 시 상기 누계 점수를 적극 참고하여 기록한다.

제7조(상점카드 발급절차)

상점 적용 학생 ⇒ 추천교사 상점카드발급 ⇒ 디지털시스템 입력(상점카드함) ⇒ 학생부 담당누계(월별 학생, 교사 결재) ⇒ 상점 통산 점수가 많은 학생 및 학년별 1학급씩 학교장 표창 수여

제4절 벌점

제8조(벌점의 부과)

1. 학생 생활지도 중 '훈계'에 해당되는 사항을 지도할 때 체벌을 대신하여 시행 절차를 마련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2. 자율적인 생활 능력의 함양을 기본으로 한다.
3. 학생의 자율적인 선도 차원에서 실시한다.
4. 상담 활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5. 벌점 부과보다는 체벌 대체 학생지도에 역점을 둔다.
6. 벌점 부과 후에도 행동의 변화가 없을 경우, 벌점 기록카드를 거듭 발부할 수 있다. 단, 즉시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두발, 지참하지 않은 복장 등)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1일 1회에 한하여 벌점을 부과한다.
7. 본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5점 이하의 경미한 행동에 대해서는 학생인성인권부에서 벌점을 부여할 수 있다.
8. 수업 중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경우는 벌점 부과와 더불어 1주일 동안 지도교사가 이를 압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
9. 동시에 여러 항목을 위반한 경우 한 장의 벌점카드에 기록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9조 (벌점의 활용 및 경감, 소멸)

1. 모든 교사는 항상 벌점 카드를 소지하며 위반 학생을 지도 시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벌점카드를 발부한다.
2. 위반 내용이 경미한 경우 현장에서 훈계를 통해 지도한다. 이때 학생이 훈계를 수용하지 않거나 수용 태도가 불량하여 정식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벌점 카드를 발부한다.
3. 학생들이 피해 의식을 갖지 않도록 취지를 충분히 납득시켜 지도한다.
4. 벌점 카드 발급 동시에 "학생 확인란"에 반드시 위반 학생의 자필 서명을 받는다. 단 학생이 확인을 거부하면 벌점카드의 비고란에 이를 기록한다.
5. 등교 시 적발된 경우는 학생부 담당 교사가 위반 학생을 메모하여 학생 자필 서명 없이 벌점 카드를 기록할 수 있다.
6. 당일 시정이 불가능한 사안에 대해 이중 처벌 받지 않도록 한다.
7. 작성한 벌점 카드는 디지털시스템에 입력하고 벌점 카드 함에 넣는다.
8. 학생부 상벌 담당 교사는 매주 금요일 벌점 카드를 디지털 시스템과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9. 벌점 발부 시 이의가 있는 학생은 담임교사, 학생부 담당교사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0. 담당 교사는 이의 신청내용을 발급교사와 상의하여 조절할 수 있다.
11. 담당 교사는 각 지도 단계에 해당되는 대상 학생을 담임교사에게 통보하여 지도하게 하며 3단계부터는 학부모 내교를 요청하여 학생과 학부모와의 상담을 받게 하고 학부모에게 협조를 요청한다. 또한 담임교사는 학생부의 지도가 종료되면 학생반성문과 지도 관련서류를 학생부로 제출한다.

12. 생활지도 점수 세부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위반 사항은 생활지도 세부사항에 준하여 별점을 부여할 수 있다.
13. 교내 봉사 이상의 처벌을 받은 학생(별점 20점 이상)은 각종 장학금 수여 및 수상 혜택에서 제외한다.
14. 별점의 누적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후 그 양만큼 별점은 소멸된다.
15. 10점 이상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별점지도카드와 함께 경위서를 학생인성인권부에 제출해야 한다.
16. 한 학기 당 별점이 20점이 넘는 학생은 사회과에서 주관하는 학생자치 모의법정의 피고인으로 소환할 수 있다.

제10조 (별점카드 발급절차)

별점적용 학생 ⇒ 전교사 별점카드 발급 ⇒ 학생 확인 ⇒ 지도교사에 제출 ⇒ 디지털시스템 입력(별점카드함) ⇒ 학생부 담당 누계확인(월별학생, 교사 통계결재) ⇒ 학생에게 안내 ⇒ 과다득점 학생 단계별 지도

제11조 (이의 제기)

1. 별점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학생은 즉시 교육현장 지도교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이의 제기를 받은 교사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규정에 의거하여 설명해야 한다.
3. 지도교사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수긍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생인성인권부 교사 또는 학생인성인권부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학생인성인권부 교사 또는 학생인성인권부장은 별점을 부과한 지도교사와 함께 심사하여 이의 신청을 한 학생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4. 위 3항에도 학생이 수긍하지 않으면 생활선도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다.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해당 사안을 심의하여 해당 학생과 지도교사에게 통보한다.

제5절 누적별점에 따른 징계

제12조 (누적별점에 따른 학생 지도)

1. 그린마일리지(상·별점제) 세부사항과 같은 별점 항목 위반 시 별점 누적 점수 합계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지도를 행한다.
2. 별점에 따른 단계별 지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도대상	지도단계	지도방법	지도책임	내용
10점이상	1단계	대면 상담 및 경위서작성	담임교사(상담) 학생부(경위서)	대면 상담 경위서작성
20점이상	2단계	정신교육, 반성문 SMS 문자 전송	정신교육(학년부), 반성문(담임)	봉사활동2시간 반성문 1회
30점이상	3단계	정신교육 학부모 1차 대면상담 SMS 문자 전송 상담교사 상담	정신교육(학생부), 대면상담(담임) 상담교사	봉사활동3시간 반성문 2회
40점이상	4단계	서약서, 교내봉사 학부모 2차 대면상담 상담교사 상담 SMS 문자 전송	서약서(학년부), 교내봉사(학생부) 상담교사	봉사활동 5시간 서약서 작성 반성문 2회
50점이상	5단계	사회봉사 활동 (학생선도 규정에 의거하여 결정)	사회봉사(학생부)	징계규정에 의한 선도교육 실시

* 학교 선도규정 위반 사안이나 학교폭력 사안은 생활선도협의회 또는 학교폭력추방위원회에서 별도 처리함.

3. 규정된 실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도 점수는 계속 누적되며 선도 절차에 불응하는 학생에게는 선도 교육의 등급을 올려 시행하고, 교내 봉사에 무성의하게 임할 경우 지도 담당교사는 봉사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위의 과정에서 이수한 봉사활동은 개인 봉사활동 실적에 가산되지 않는다.
5. 벌점제는 학년도 단위로 운영하되 학년도가 바뀌면 전 학년도 누계 점수는 소멸한다.
6. 누적 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 학생회의 정.부회장, 학급의 정.부회장에 입후보할 수 없고, 각종 표창 추천에서 제외된다.
7. 누적 벌점에 따른 징계에도 불구하고 다시 징계의 사유가 발생하면 상위 단계의 징계에 처할 수 있다.
8. 학생인성인권부에서는 매월 첫째 주에 과벌점 학생을 대상으로 단계별 지도를 실시한다.

제6절 패자부활

제13조 (패자부활의 기회 제공)

1. 벌점을 상쇄할 수 있는 항목을 정하여 벌점이 많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상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 벌점 상쇄 항목은 다음과 같다.

항목	상 쇄 항 목	지도교사	상쇄 점수
1	교내 봉사활동 1시간	담임	3
2	좋은 시 한편 외우기	국어과 교사	3
3	학교 환경 정화 활동(교내외 쓰레기 줍기, 화장실 청소, 낙서 제거)에 2회 이상 성실히 참여한 경우	환경부장 학생인성인권부	5
4	학생 인성 인권 부 선생님의 권유로 학교 상담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	상담선생님	5
5	자진해서 참여하는 교내외 캠페인 활동(2회 이상) <아침 정문 앞 교통, 예절, 복장 단정 캠페인 참여>	학생인성인권부장	5
6	반성문 쓰기(A4용지 1장 이상)	담임, 학년부장	43
7	선생님 추천도서 읽고 독후감(A4용지 1장 이상)	담임, 교과 선생님	5

* 매월 4, 5주를 패자 부활 주간으로 하여 학생들이 벌점을 상쇄하는 기간으로 운영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10년 3월 19일 제정하여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2011년 4월 29일 개정하여 2011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이 규정은 2013년 2월 27일 개정하여 2013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이 규정은 2014년 3월 20일 개정하여 2014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상점기준표】

구분	항목	내 용	점수
수상 및 명예 선양	1	봉사, 모범, 선행 관련 학교장 상, 표창 수상	4
	2	봉사, 모범, 선행 관련 외부 기관의 상, 표창 수상	4
	3	도/시 단위 이상의 기관장 상, 표창 수상	5
	4	기타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자	4
자격증 및 인증시험	5	한국어, 수학, 외국어, 한문, 컴퓨터, 기타 (각 교과 담당 선생님이 인정하는 자격증 취득)	3
습득률 신고 및 고발신고 활동	6	분실물 습득 신고(주인이 찾아 갔을 때, 일정액 이상)	3
	7	학생 관련사건 및 사고신고	3
	8	학교폭력, 흡연, 금품 갈취 등을 신고하거나 만류한 경우	5
선행 및 모범	9	용의 복장이 단정하여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될 때	3
	10	생활이 어려운 학우, 거동이 불편한 학우를 도움	3
	11	임무를 책임지고 완수하여 모범이 된 경우	3
	12	외부인에 의해 선행.모범이 제보된 학생	5
	13	인사 예절이 다른 학생의 귀감이 된 학생	3
	14	생활 태도나 교과 성적 향상이 두드러진 경우	3
봉사	15	학급 봉사 - 교실 환경미화에 자발적으로 적극 협조한 학생 - 학교 행사에 학급을 대표하여 적극 협조한 학생 - 학급일이나 면학 분위기 조성에 앞장 선 경우	4
	16	학교 봉사 - 학교 전체를 위해 지속적으로 성실히 일한 학생 (학생회, 복장지도, 방송부원 등)	5
	17	대외 활동 봉사에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학생 (한 학기당 25시간 이상)	5
	18	휴지 줍기, 청소 및 주변활동을 잘함	3
	19	스스로 캠페인 활동에 참여하거나 청소한 경우(2회 이상)	3
	20	어려운 친구나 이웃돕기에 적극적 참여	3
수업	21	지속적으로 바른 수업 태도를 보이는 학생	3
	22	수업매체 설치 등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운 경우	3
기타	23	분기별 지각, 조퇴, 결과, 결석이 없는 학생	3
	24	1개월간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학급 학생 전원	3
	25	1개월간 벌점이 전혀 없는 학급 학생 전원	3
	26	상기 항목에 속하지 않으나 상점을 부여할 만한 행위를 한 학생	3

별표 4

【별점기준표】

구분	항목	내 용	점수
출결	1	등교 시 지각(교문 07:50)	2
	2	무단 지각(외출, 결과, 조퇴), 교내외 행사 무단 불참	3
	3	무단 결석, 대리 출석, 대리로 답한 경우	5
용의 및 복장	4	교내에서 명찰 미착용	1
	5	미용 전열기구의 교내 반입 및 사용	2
	6	실내화 등하교	2
	7	생활 규정에 위반되는 용의 상태 (색조화장, 매니큐어, 피어싱, 칼라렌즈 등)	3
	8	교복 이외 복장의 등하교	3
	9	생활 규정에 위반되는 교복 착용(길이 및 교복 변형)	5
	10	생활 규정에 위반되는 두발(파마, 염색)	5
	11	급식실, 강당 등 실내 공공질서 위배(새치기, 소란 등)	3
	12	주변 및 청소 활동 불량	2
	13	실내외 쓰레기 무단 투기, 실내에서 침, 껌을 뱉는 행위	3
준법 생활	14	다툼, 욕설 및 실내에서 소란(고성, 괴성)피우는 행위	4
	15	이성간 성적 발언 및 행동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위	5
	16	교문 이외의 통로로 등하교 및 무단외출을 하는 행위	5
	17	교내 불건전한 이성 교제(손잡기, 팔짱끼기, 껴안기 등)	5
	18	등교시간 자가용과 택시 정문하차/신호위반, 무단횡단	2/5
	19	남학생의 여학생 화장실 출입, 여학생의 남학생 화장실 출입	5
	20	집단 폭행을 모의했거나 선동, 가담한 학생	10~징계
	21	공공 시설물, 집기류 등을 고의로 파손한 학생	5
	22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5
	23	미성년자의 오토바이 운전 및 동승	10~징계
	24	음란, 불량 관련물 소지자 및 유포 관련자	10~징계
	25	타인(동·상·하급생)을 구타하거나 흉기를 폭행에 사용한 학생	10~징계
	26	교내외 흡연(담배·라이터 소지), 음주(술 소지)	10~징계
	27	동전치기 등 사행·도박 행위, 금품을 갈취한 행위	10~징계
수업태도	28	친구의 물건 및 학교 비품 훔치는 행위/학생증 도용 행위	10~징계
	29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손한 언행으로 교사의 명예 훼손	10~징계
	30	생활지도 상 외부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10~징계
기타	31	인장 및 제 증명을 위조해 문제를 야기한 학생	10~징계
	32	합당한 사유 없이 늦은 입실	3
기타	33	수업 태도 불량, 수업 방해, 자율학습 등 면학 분위기 저해	3
	34	항목에 없지만 규정상 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경미한 위반	2
	35	항목에 없지만 규정상 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중대한 위반	5

※ 학교 폭력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규정에 의거 처리

제5장 학생자치회 운영 규정

제1절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호남제일고등학교 학생자치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초 · 중등교육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학생 자치활동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를 신장하며 건전한 학풍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 회는 호남제일고등학교 내에 둔다.

제4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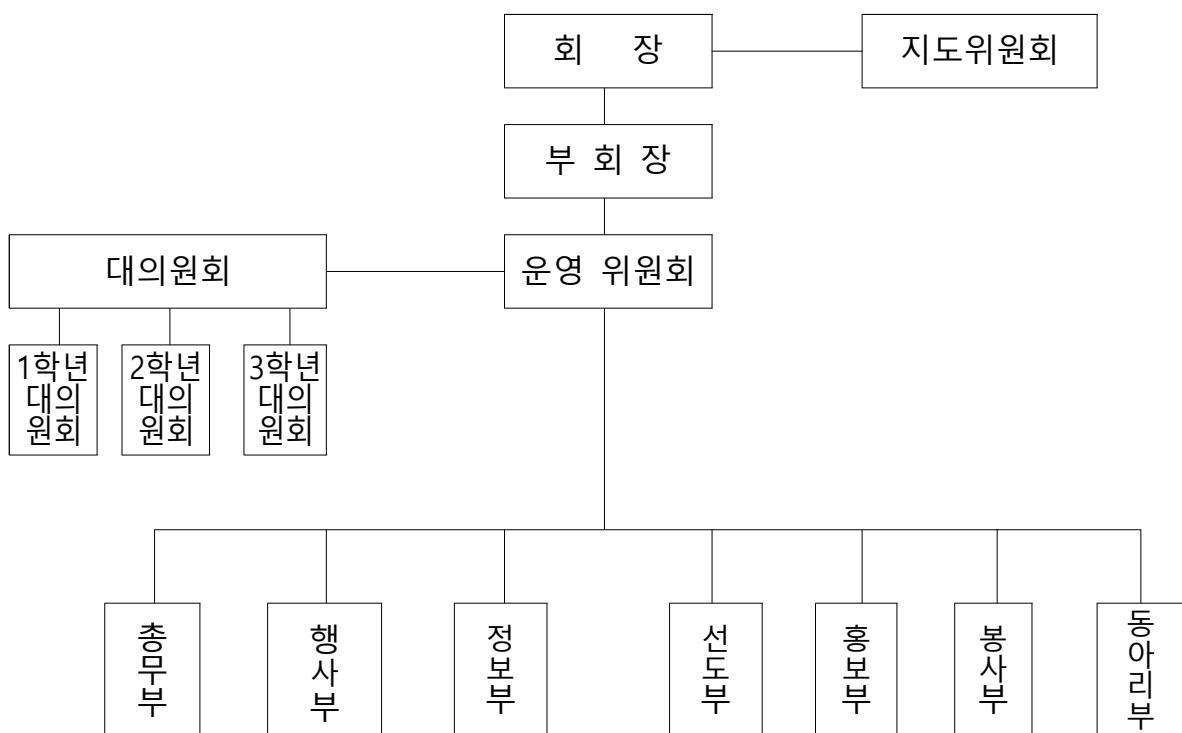
제5조(권리 및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금지활동) 본 회의 회원은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장의 행정사항에 관여할 수 없다.

제7조(승인) 학생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8조(기구)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회 대의원회(이하 대의원회라 칭한다)와 학생자치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칭한다)를 두고 자문을 위해 학생자치회 지도위원회(이하 지도위원회라 칭한다)를 둔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도표 조직과 같이 운영하도록 한다.

제9조(조직)



제10조(기능)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1. 학예, 보건체육, 취미 및 특기 신장에 관한 활동
2. 정서 함양, 심신 수련을 위한 활동
3. 학교의 건전한 기풍을 확립하기 위한 활동

4. 건전한 학생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활동
5. 학교 및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
6. 학교축제 및 동아리발표회에 관한 활동
7. 기타 학칙과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제11조(연간 활동계획) 학생자치회가 조직되면 학교의 실정, 학생들의 요구와 실태에 따라 자율적으로 협의활동과 위원 활동 영역을 균형 있게 연간 활동계획에 반영하여 실천하도록 한다.

1. 협의 활동

- ① 학생자치회 조직 및 임원 선출, 운영
- ② 학교생활의 주요 과제, 공동 관심사 협의
- ③ 학교 단위의 행사계획 수립

2. 위원 활동

- ① 학교생활규칙 실천
- ② 행사 운영 및 봉사활동
- ③ 수련 및 친교활동

3. 운영 방법

- ① 학교 행사 활동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며, 평가, 반성 등 일련의 활동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② 현장 학습활동이나 행사활동을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실시 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여 학부모, 학생에게 미리 알림으로써 행사에 대한 준비를 하게 한다.
- ③ 학교 행사 활동 실시 과정에서 교육적인 지도를 강화해야 하며, 평가회를 통하여 행사에 대한 평가 및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한다.
- ④ 행사활동은 학생의 능력 수준에 알맞게 전개하여 교육적 의의를 살리고 특별활동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제12조(재정)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13조(구성)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1. 학생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각 부의 부장 및 차장

제14조(기능) 운영위원회는 학생자치회 집행기관으로서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자치회의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예산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대의원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4. 대의원회에서 위임 및 요구한 사항
5. 특별 활동에 관한 사항
6. 기타 운영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제15조(부서) 본 회의 활동을 위해 다음의 부서를 둔다.

1. 총무부 : 제반사업의 계획, 서무, 문서, 회계 및 기타 사항
2. 행사부 : 학·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등에 관한 모든 행사 사항

3. 정보부 : 학교 간 학생구성원의 모든 단체와의 긴밀한 연락 및 협회에 관한 사항
4. 선도부 : 학내 질서 및 교풍 확립에 관한 사항
5. 홍보부 : 학교의 모든 사항 및 학생 구성원의 활동에 관한 사항
6. 봉사부 : 학생 구성원의 안전한 학교생활과 환경 미화에 관한 제반 사항
7. 동아리부 : 교내 동아리의 활동 및 구성원의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

제16조(회의)

1. 운영위원회는 회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2.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7조(임원의 역할) 본 회 임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으로서 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각 부 부장은 소속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차장은 부장을 보좌하고 업무를 협의한다.
4. 총무부장은 본 회의 사무를 관리하고, 회의록을 담당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학교장 임명일로부터 차기 총학생회장 임명일까지로 한다. 단, 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고,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9조(임원의 선출 임명)

1. 학생자치회 정·부회장은 <학생회 정·부회장 선출규정>에 따라 선출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2. 각부 부장은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천 대상자의 자격을 대의원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으며 학교장이 임명한다.

제20조(임원의 해임)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 학교장은 학생자치회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징계를 받은 경우
2. 각 부 부장, 차장의 활동이 미진하여 학생회장이 해임을 요청하고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한 해임 등의 과정을 거친 경우

제3절 대의원회

제21조(구성) 대의원회는 학생자치회 정·부회장, 학급의 정·부회장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22조(기능)

1. 대의원회는 학생자치회 심의·의결 기관으로서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사업 계획의 심의 및 결과 보고의 승인
 - ② 학생자치회의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③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 ④ 운영위원회에 위임 및 요구할 사항
 - ⑤ 기타 대의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2. 학년별 대의원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각 학년 학급자치회의 의견을 수렴한다.

② 각 학년의 중요 행사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

제23조(회의)

1.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며, 의장이 소집한다.
2. 정기회는 매 달 첫째 주 화요일에 소집한다.
3.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학생인성인권부장의 허락을 받아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②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③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4.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절 지도위원회

제24조(구성 및 운영)

1. 학생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생회지도위원회를 둔다
2. 학생자치회지도위원회는 교감, 학생인성인권부장, 기획, 학생회 담당교사로 구성하며, 교감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25조(규정의 개정) 본 규정은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 대의원회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7년 4월 30일 개정하여 2007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08년 4월 15일 개정하여 2008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이 규정은 2010년 3월 19일 개정하여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4호 이 규정은 2011년 4월 29일 개정하여 2011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5호 이 규정은 2012년 2월 27일 개정하여 2013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6장 학생자치회 정·부회장 선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자치회 운영규정 제13조에 의거 민주적 원칙과 절차에 따라 학생자치회 정·부회장을 선출함으로써 학생의 자치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1. 학생자치회 정·부회장 선거(이하 "선거"라 한다)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생자치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칭한다)를 두며 선거일 10일 전에 구성한다.
2. 학생자치회장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부회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각 부부장을 선거관리위원으로 하되 필요시 약간 명을 선거관리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단, 학생자치회 정·부회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하는 자는 선거관리 위원이 될 수 없다.
3. 선거관리 위원의 임기는 선거업무 개시 일부터 당선자 확정 공고일까지로 한다.
4. 선거관리 위원은 어느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없으며 엄정 중립을 유지한다.

제3조(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선거권자 명부 작성에 관한 일
2.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일
3. 선거운동 관리에 관한 일
4.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일
5. 당선인 결정에 관한 일
6. 선거에 관한 이의 사항의 심사.처분
7. 기타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일

제4조(선거 시기 및 선거일 공고)

1. 선거 시기는 여름방학 직전으로 하며 학교장이 필요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선거일은 학생회 대의원회(이하 "대의원회"라 칭한다)의 협의를 거쳐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선거 30일 전까지 공고한다.

제5조(선거권)

선거권은 선거일 공고일 현재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있다.

제6조(선거방법)

1. 총학생회장과 2학년 부회장은 런닝메이트로 출마하여 당선됨을 원칙으로 한다.
2. 단일 후보일 경우에는 학생 투표에서 유권자 1/3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을 받는다.

제7조(입후보 자격)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학생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2. 활동적이고 통솔력이 있으며 적극적인 학생
3. 교사 2명과 학생 5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임기 시작 직전 학기부터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학생생활평점제의 별점 10점 미만의 학생
4. 해당 학기 중 사고 결석, 사고 조퇴, 사고결과가 없어야 한다.
5. 전입생의 경우, 전입 후 3개월 이상 재학하여야 한다.

제8조(투표자 명부의 작성)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로부터 7일전에 투표자 명부 2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입후보 등록 및 공고)

1.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학생은 선거일로부터 7일전에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 ② 교사 및 학생 추천서 각 1부
2. 제1항 제2호의 추천서는 교사 2명과 선거권자 5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 마감 후 즉시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하여 후보자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자격심사) 입후보자 등록자에 대한 자격심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촉을 받아 학생회 지도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제11조(등록 무효 및 사퇴)

1. 후보자 등록 후에 제7조의 각호에 미달한 점이 발견된 때 및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2.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본인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선거운동)

1.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 등록 공고일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2. 후보자는 선거권이 있는 재학생 중에서 1, 2학년 각 10명 이내의 선거 운동원을 둘 수 있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및 선거 운동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심의를 거쳐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 ① 선거권자에게 금품 제공 및 제공을 약속하는 경우
 - ②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경우
 - ③ 기타 불법선거 운동을 하는 경우

제13조(벽보 등)

1. 후보자는 지정된 벽보와 피켓 이외에 어떤 선전물도 사용할 수 없다. 단, 학생회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다.
2. 후보자는 기호, 성명, 사진, 자기소개와 공약 사항 등을 기재한 벽보 4매를 부착할 수 있으며, 벽보를 부착 할 경우,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 날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벽보의 규격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양식으로 작성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벽보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장소에 기호 순으로 부착한다.
5. 후보를 소개하는 피켓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학생회지도위원회에 위촉하여 심의 · 허가한다.

제14조(소견발표회)

1. 후보자는 합동 소견 발표회를 통하여 자신의 소견, 공약 사항 등을 선거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단, 소견발표 시 발표내용을 원고로 작성하여 사전에 학생회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기간 중에 선거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합동 소견 발표회를 개최하고 발표 시간은 후보자마다 5분 이내로 하며, 발표순서는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한다.
3. 후보자는 선거 운동원과 함께 쉬는 시간 및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각 학급을 순회하며 개인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이 때 수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신고하여 각 후보별로 조정된 일정에 따라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제15조(투표)

1. 투표는 선거권자 1인 1표의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투표 장소를 선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3.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투표 참관인을 둘 수 있으며 투표 참관인은 투표 진행과정에서 잘못이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개표)

1. 개표는 투표마감 직후 지정된 개표장에서 실시한다.
2.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개표 참관인을 둘 수 있으며, 개표 참관인은 개표 진행과정에서 잘못이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 ①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②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 ③ 2인 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 ④ 어느 난에 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 ⑤ "○"표 대신에 다른 기호나 표시를 한 것

제17조(당선자 결정)

1. 개표 결과 회원 재적 2/3 이상의 유효 투표 중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동점일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재직의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이상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2. 입후보 인원이 단독일 경우 제6조 제2항에 준하고,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학생회 대의원회에서 선거규정을 준용하여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할 수 있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 명단을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즉시 공고한다.

제18조(재선거)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하며, 2, 3호의 경우에는 2위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 ① 학생회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선거 전부를 무효로 결정한 경우
 - ②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파선거권이 없게 된 경우
 - ③ 당선인이 선거일 이전에 당해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당선이 무효로 결정된 경우
2. 재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실시하며, 선거 절차는 당초 선거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19조(보궐선거)

1. 학생회장 궐위 시는 교사 추천된 학생에 한하여 대의원회의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2. 학생회부회장, 각 부부장 및 차장 궐위 시는 학생회장이 제청하고 재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대의원회의 동의 과정을 거친다.

제20조(선거에 관한 이의 신청)

1. 선거와 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학생은 당선인 공고 후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 학교장은 제1항의 이의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생회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 신청의 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이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당선 무효) 선거 운동 기간 중에 당선인, 선거 운동원 및 학부모 등이 제12조 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 운동을 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학생회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당선 무효로 결정할 수 있다.

제22조(기타)

1.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사무 관련 서류 일체를 학생회 담당 교사에게 인계하며, 학생회 담당 교사는 이를 당선 공고 후 1년간 보관한다.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학생회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23조(규정의 개정) 본 규정을 개정할 때는 미리 학생 의견을 듣고 나서 대의원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개정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7년 4월 30일 개정하여 2007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08년 4월 15일 개정하여 2008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이 규정은 2010년 3월 19일 개정하여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4호 이 규정은 2011년 4월 29일 개정하여 2011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5호 이 규정은 2012년 2월 27일 개정하여 2013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7장 학급회 정·부회장 선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급회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학급 정·부회장을 민주적인 원칙으로 공정하게 선출, 임명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수) 각 학급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둔다.

제3조(임무)

1. 회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급을 대표하며 학급 활동을 총괄한다.
 2. 학급의 자치 활동을 통솔하며 명랑한 학급 분위기를 조성한다.
 3. 학급의 요구 사항이나 의견을 학생회 대의원회에 전달한다.
 4. 담임 및 다른 선생님의 지시.전달 사항을 학급 학생들에게 전달한다.
 5. 학급 내 폭력, 절도, 도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급우들을 선도한다.
 6. 학급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담임 및 담당 선생님에게 신고한다.
 7. 학급 생활 규칙이 잘 지켜지도록 통솔한다.
 8. 조용하고 원만한 수업 분위기를 조성한다.
 9. 학급 환경을 깨끗이 하고 학급 비품을 관리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후보 자격) 정·부회장 후보는 다음 각 항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임기 시작 직전 학기부터에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학생 생활평점제 규정> 의 별점 10점 미만 학생.
2. 직전 학기 중에 사고 결석, 사고 조퇴, 사고 결과가 없어야 한다.
3. 전입생의 경우, 전입 후 3개월 이상 재학하여야 한다.

제5조(선출 방법)

1. 학급회는 선출위원 3명을 선출하여 투표와 개표를 진행한다. 단, 입후보자는 선출위원이 될 수 없다.
2. 후보자 추천은 학생이 하며, 담임교사는 추천된 학생이 제4조 각호의 자격 요건에 부합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지도한다.
3. 정·부회장은 본회 회원 전체의 무기명 비밀 투표로 선출한다.
4. 입후보자에게는 적절한 순서에 의한 소견 발표의 기회를 부여한다.
5. 부회장을 동시에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직 과반수 득표자를 회장, 차점자를 부회장으로 한다. 재직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다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고득표자를 회장, 차점자를 부회장으로 한다.

제6조(임기)

1. 정·부회장의 임기는 1학기로 한다.
2. 정·부회장이 궐위되거나 해임된 경우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3. 학교장은 정·부회장이 임기 중 제4조 각호를 위반한 경우 해임할 수 있다.

제7조(임명)

1. 담임교사는 학급에서 선출한 정·부회장 명단을 지정된 양식에 의거 학생인성인권부에 제출한다.
2. 교감 및 학생인성인권부장은 제4조 각호의 자격요건을 확인한다.

3. 학교장은 정·부회장에 선출된 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제8조(임명시기)

1. 1학기 : 신학기 제2주중에 선출하여 제3주 중에 임명한다.

2. 2학기 : 여름방학 종료 직후에 선출하여 신학기 제1주 중에 임명한다.

제9조(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생회 정·부회장 선출 규정”을 따르며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담임교사의 지도에 따른다.

제10조(규정의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학생회 대의의회 재적위원 과반수로 의결한 후 학교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07년 4월 30일 개정하여 2007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이 규정은 2011년 4월 29일 개정하여 2011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1]

학생회장 · 부회장 후보자 추천서

1. 후보자 인적 사항

후보직책	이 름	학년 반	번호	생년월일

2. 학생 추천

이 름	학년반	번호	인(서명)	이 름	학년반	번호	인(서명)

201 년 월 일

호남제일고등학교학생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학생회장 · 부회장 입후보 보호자 동의서

후보직책	이 름	학년 반	번호	생년월일

위 학생은 201 학년도 호남제일고등학교 학생회(학생회장, 부회장)

후보로 등록하고자 합니다.

2 0 년 월 일

후 보 자 : (인)

보 호 자 : (인)

호남제일고등학교학생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서 약 서

본인은 호남제일고등학교 학생회장단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 위원으로서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하여 선거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특정 후보를 위한
일체의 선거운동을 하지 않으며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 0 1 년 월 일

호남제일고등학교선거관리위원 : (인)

호남제일고등학교학생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학생회장 · 부회장 후보자별 참관인 명단

1. 참관인 명단

이 름	학 번	인(서 명)

위 학생을 학생회장 · 부회장 후보의 참관인으로 등록합니다.

2 0 1 년 월 일

학생회장단 후보 : (인)

(인)

호남제일고등학교학생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사 퇴 서

본인은 201 학년도 학생회(학생회장, 부회장) 후보로 등록하였으나
일신상의 이유로 후보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201 년 월 일

후보자 : (인)

보호자 : (인)

호남제일고등학교학생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